

[사 건 명] 행심 2016-40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6. 7. 18. 08시경 등굣길에 청구인 ○○○가 같은 반 반장 ◆◆◆에게 돌을 차며 “돈 안들이고 지옥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교실에 돌을 가져와 위협하였고, 같은 날 교실에서 청구인 옆에 있던 ▼▼▼이 “빨리 보내지 뭐해”라고 말하였으며, 2016. 7. 19. 위 피해학생 ◆◆◆의 부모가 117에 신고하였다.

나. 2016. 7. 26. 학폭위에서 청구인은 서면사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받고, 2016. 10. 27. 이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는 위원장 직권으로 인용하여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위 집행정지인용결정에 대해서는 개최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동의로 추인되었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2016. 7. 18. 등굣길에 청구인의 모(母)는 청구인과 쌍둥이 동생 ▽▽▽를 학교 정문에 내려줬으며 둘이 함께 교실로 가는 동안 ◆◆◆을 본 적이 없고, 청구인은 교실에서도 ◆◆◆에게 어떠한 말도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는 신고내용을 계속 반복하였으며, 학폭위는 CCTV 확인이나 증인 확보와 같은 증거조사 없이 피해학생의 불분명한 진술로만으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3학년에 불과한 청구인이 학교폭력 행위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며, 학폭위에 회부되면 모두 처분돼야 한다는 부당한 사유로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전담기구 조사결과 사건 장소는 CCTV 촬영범위가 아니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 모(母)가 등굣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으나, 이후 2016. 7. 22. 전화면담과 7. 26. 학폭위에서 ◆◆◆과 그의 모(母)가 진술한 부분에서 등굣길에서는 청구인만 괴롭혔고 교실에서는 청구인과

▼▼▼이 괴롭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청구인의 학교폭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사건 발생 당시 담임교사는 병가 중이었고, 담당교사 면담시 관련학생들이 모두 부인하여 진술서나 상담일지를 작성하지 못하고 이후에는 진술을 토대로 진행하였는데, 사건 접수 후 청구인의 부(父)가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으며, 학폭위에서도 청구인과 그의 부(父)는 해당 사건을 인정하고 사과의사를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및 관련 학생의 진술과 학폭위 내용을 종합하여 안전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최초 안전내용과 비교하면 관련 학생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점, 장소가 등굣길에서 등굣길과 교실로 확대된 점, “없애버려”라는 말을 “빨리 보내지 뭐해”로 수정되었을 뿐이어서 학교폭력의 내용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른 사실을 가지고 청구인에 대해 심의한 것이 아니므로 학폭위 심의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22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제18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측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2016. 7. 18. 08시경 등굣길에서 청구인이 ◆◆◆에게 돌맹이를 던지며 '돈 안들이고 지옥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청구인의 옆에서 건외 ▼▼▼이 '없애버려'라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 ◆◆◆의 모친이 117 신고에 접수한 사실, ② 사건 접수 후 청구인의 부(父)는 사과의사를 피해학생 및 피해학생 부모 측에 전달하였으며, 이후 개최된 학폭위에서도 청구인과 그의 부(父)가 참석하여 학폭위 상정 안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 측에서는 사건 당일 오전 등굣길에는 청구인과 쌍둥이 동생 ▽▽▽가 함께 등교하였을 뿐 청구인은 피해학생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만일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건 발생 처음부터 폭력행위는 없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학폭위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청구인이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여야 할 것이나, 사건 접수 후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학폭위 개최 당시에도 청구인과 그의 부(父)가 참석하여 학폭위 상정 안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지 않았던 사실에 비추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측에서는 담당교사가 전화를 하여 모든 사실

을 인정하면 혐의 없음으로 끝낼 수 있다고 하면서 모두 인정하라는 종용을 받고 이를 그대로 믿어 학폭위에 출석해서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측에서는 청구인 측에 그러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달리 청구인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한편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이는 이 사건 청구인 측에서 학교에 청구인의 학교폭력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요청하였던 것이 아니라, 관련된 학생(▼▼▼)측에서 자신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위 관련된 학생(▼▼▼)의 모친이 먼저 학교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어서, 위 청구인의 주장이 사건 발생 이후 청구인 측에서 학교 측에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피해자 측의 진술 및 청구인 측의 학폭위에서의 자인 진술만을 근거로 학폭위에서 심의결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중한지 살펴보면, 학폭위에서는 청구인의 행위와 피해자 측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학폭위 심의 결과 근거법령에서 정한 가장 경한 처분으로 정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으로 결코 이 사건 처분이 중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

V.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